

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
[] 제작 [] 수리 [] 사용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	전화번호	
검정기관	전화번호			
	소재지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적은 서류 1부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20,000원